

안전서비스통장거래약정서

제1조(사용대상계좌)

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는 은행이 정한 예금으로서 예금주가 신청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한다.

제2조(입·지급거래)

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좌는 본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입금거래는 할 수 있으나 지급거래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현금지급기에서 카드로 인출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급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지급거래시 본인 확인)

지급거래시 예금주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면책)

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청구서상의 인감, 비밀번호가 신고된 인감 및 비밀번호와의 일치함을 인정하여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통장, 카드, 인감 등의 분실, 비밀번호의 누설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5조(준용)

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과 저축종류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